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공고 제 2026-10호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공무직 근로자(환경실무관) 채용 공고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환경실무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1. 모집 개요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환경실무관 (공무직)	1명	▸묘지 내 모든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청소 등 환경관리 업무 ▸묘역 정화활동 및 묘비, 잔디점검 등 묘역 환경관리 업무 ▸묘역안장 보조(묘역굴토 등 안장 전·후 작업 전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및 조경작업 지원업무 ▸재해 예방 및 복구 작업(제설작업, 풍수해 피해 복구 등) ▸묘지 행사 지원 및 기타 소에서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국립4·19 민주묘지

2. 근무조건 등

❍ 신 분 : **공무직 근로자**

❍ 근무기간 : ‘27.1.4.(예정)~ 정년(또는 계약해지시)

※ 근무기간은 국립4·19민주묘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최초 3개월은 수습근무 기간으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 / 1일 8시간(08: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일 및 휴무일, 근무시간은 근무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별도 명령에 의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 주기적 근무 실시

❍ 보수 및 후생복지

- 기본급(월) : 2,250,000원 / 정액급식비(월) : 160,000원

※ 임금협약, 지침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포인트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별도 지급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3. 응시자격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사람)

○ 채용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로, 정년(65세) 미만**인 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여성 및 장애인 제외)

○ 성별·학력 : 제한 없음

○ **토요일 및 공휴일(명절 등) 근무가 가능한 자**

○ 신체 건강하고 현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 기타 :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나. 서류전형 우대사항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 서류전형 세부심사 시

- 청소 등 환경미화 분야 근무경력자(종사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

※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1종 대형 또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 1개만 인정

-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55세 미만) 및 고령자(만55세 이상)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자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일자/장소 : ‘26. 12. 8.(화)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영상실

○ 심사방법

- 제출서류 구비 여부,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10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자격의 기본요건 충족 시 합격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초과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등)에 따라 10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할 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심사기준 : 응시자격 적격여부 및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 12. 10.(목)

- 국립4·19민주묘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나.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일시/장소 : ‘26. 12. 15.(화)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영상실

○ 심사기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평정요소(5)	배점방법
가.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 평가방식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면접시험 대상 인원 수에 따라 면접방식(개별·단체)은 달라질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2배수의 예비합격자를 결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일시: ‘26. 12. 17.(목) /국립4·19민주묘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 최종합격자는 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라. 계약체결 : ‘27. 1. 4.(월) 예정

❍ 결격사유 등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적격 시 계약 체결

※ 다음의 대상자는 근로계약 부적격자로 판정

- 기한 내 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자
- 결격사유 조회 및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불합격)자로 판정된 자
- 제출서류 허위 판정
- 근로계약 불희망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 평정결과 차순위자(예비합격자)와 채용계약

5.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가. 채용공고 기간 : ‘26. 11. 19.(목) ~ ‘26. 12. 1.(화)

나. 원서접수 기간 : ‘26. 11. 24.(화) ~ ‘26. 12. 1.(화)

다. 원서교부 : 국립4·19민주묘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채용공고 붙임 서식 다운로드 활용

라. 접 수 처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마.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바. 등기우편주소 : (우)01009, 서울시 강북구 4·19로 8길17(수유4동 산9-1),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공무직 채용담당자(‘공무직채용 응시원서 재중’)/ 문의전화 : 02-996-0419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문자로 통보 예정

6.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붙임1 참조)
2. 응시원서 1부(붙임2 참조)
3. 이력서 1부(붙임3 참조)
4. 자기소개서 1부(붙임4 참조)
5. 직무수행 계획서 1부(붙임5 참조)
6.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6 참조)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7 참조)
8.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8 참조)
9.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리스트 1부(붙임9 참조)
10.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대상자 한함)
11.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12.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3. 운전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증)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변경 공고 또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채용서류의 반환)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 반환신청한 자의 서류는 반환

(최종 채용합격자는 제외)하며, 반환신청하지 않는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국립4·19 민주묘지관리소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근무기간에 대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공무직근로자 채용담당자(☎ 02-996-041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생년월일	성 명	연락처
환경실무관 (공무직근로자)			

□ 제출 서류에 ✓ 표시 후 아래의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으로 편철

※ 공고문에서 요구하고 인정되는 서류 이외의 자료 제출 지양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목 록	제출	미제출
<필수사항>		
1. 응시원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 계획서 1부		
5.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8.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리스트 1부		
9. (남성)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 1부		
10.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우대사항> 해당시		
11.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경력기간 :)		
12. 운전면허증 사본 1부		
13.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증) 1부		

< 붙임 2 >

응 시 원 서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귀하

본인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공무직근로자(환경실무관)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인)

응 시 번 호	※	성 명		응시 직종	환경실무관
주 소	E-mail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응 시 원 서 (부본)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공무직근로자(환경실무관)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 명		응시 직종	환경실무관

응 시 표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공무직근로자(환경실무관)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 명		응시 직종	환경실무관

년 월 일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 **주의사항** : 1. 면접 당일 신분증 제시 후 응시표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가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1)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

※ 성명 ·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휴대폰)는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

2) 성　명 : 정자로 기재

3)「※」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접 수 요 령≫

① 응시원서를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② 응시원서는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붙임 3 >

이 력 서

※ 접수번호		응시 직종	환경실무관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성 명 (한자)	
	현 주 소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비상연락처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경력사항					

우대사항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담당업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증명서·증	종류	급수	등록일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붙임 4 >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 직종
		환경실무관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본인 장·단점,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4용지 1매 이내 작성**

※ 블라인드 채용 기준에 따라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작성시 삭제)**

. . . 작 성 자 : (인)

< 붙임 5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 직종	환경실무관	연락처	
세부 추진 계획	※ A4용지 1매 이내 작성		

< 붙임 6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 소			

2. 정보조회·제공·활용목적 및 범위

1) 상기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는 공무직근로자 채용 등을 위해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또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활용하여 채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범위 : 기본정보, 신원조회, 자격조회, 경력조회, 범죄경력조회 등

3) 그 외 정부(행정정보공동이용망),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전산시스템정보를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에서 요청·조회·활용하여 채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범위 : 기본정보, 신원조회, 자격조회, 경력조회 등

3. 동의서 유효기간 :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0년간 보유

. . .

성 명 :　　(인)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귀하

※ 개인정보동의서는 모든 사업 신청자에 대해 작성, 제출하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 붙임 7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에서 시행하는 공무직근로자(환경실무관)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귀하

< 붙임 8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성명(생년월일) :

연 락 처 :

위 본인은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22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의 무효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확 인 자 :　　(서명)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장 귀하

< 붙임 9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 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미화,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